

결정요지서

1. 제목 :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(2009.05.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의 위헌제청 결정

2.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
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 ⑥ :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·지상권자·전세권자·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을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주요내용

위 조항이 재산권 침해의 정당한 보상원칙, 적법절차의 원칙, 과잉금지 원칙,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의 의심이 있으므로 위헌제청 결정을 함